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2021. 11. 29.)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07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 라.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작성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출연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야 하는바,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우리 구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

다.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2022년도 출연금: 18,222천 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2020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 (0.012%)를 출연금으로 배정

4. 관련법규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본 계획안의 출연금은 관련 규정¹⁾에 따라 전전년도(2020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0.012%)에 해당하는 18,222천 원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함이며,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합당하므로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다만, 우리 구 연도별 출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총액이 137억 9,726만 7천 원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출연금이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재정 분권 등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대해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우리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 원)

회계연도	총예산	출연금	산출기초
2022	18,222	18,222	151,848,637 × 0.012%
2021	16,098	16,098	123,830,180 × 0.013%
2020	16,616	16,616	110,779,604 × 0.015%
2019	15,352	15,352	102,347,001 × 0.015%
2018	14,495	14,495	96,632,674 × 0.015%
2017	14,394	14,394	95,955,040 × 0.015%

【참고자료: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